

地 籍 課

□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방안

답

- 읍·면 지가조사원의 직무교육강화로 정확한 조사 실시 토록하고
- 지가산정후 산정된 개별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 및 20일 동안 열람시켜
-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하여 읍·면 심의회를 거쳐 적정가격을 산정하고
-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정밀검정토록하여 양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에게 지가를 경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나가도록 하겠음.

辯

內

- 아울러 본 군에서는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공시지가를 전담 할 수 있는 지적직 1명을 읍·면에 보강하여 줄것과
- 인원보강이 어려울시 지가조사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위탁조사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음.

容

郡 政 質 問 答 辯 資 料

室課所長 지적과장 정 수동 (印)

質問日字	1995. 9. 12	質問議員	김 영 안 의원
質問 內 容 要 約	<p>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수 허가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의 징수현황과 수수료에 대한 사용용도</p>		
答 辯 內 容	答辯日字	1995. 9.	答 辯 者 지 적 과 장 정 수 동
答 辯 內 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부담금의 부과·징수는 1990. 1. 1부터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○ 먼저 우리군에서 90년도부터 95년 8월 말까지 부과·징수한 개발부담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○ 총 54건에 2,529,430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22건 1,225,077천원을 징수하였고, 32건 1,304,353천원은 미징수 하였습니다. ○ 미징수된 사유로는 체납이 10건 715,898천원, 납기미도래가 22건 588,455천원이며, 체납건중 6건은 관할 법원에 토지를 가압류 조치하였고 최근 체납된 4건은 납부 독촉중이며 미납시 추가압류 조치계획입니다. ○ 징수금액중 50%와 위임수수료 7%가 군수입이며 사용용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경상비 및 주민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 		

郡政 質 問 答 辯 資 料

室課所長 현 삼 식



<p>質 問 日 字</p>		<p>質 問 議 員</p>	<p>김 영 안 의원</p>
<p>質 問 內 容 要 約</p>	<p>각종 개발행위 수허가시 수허가자가 부담하는 (농지전용부담금, 개발이익부담금) 의 징수현황과 수수료에 대한 사용 용도는</p>		
<p>答 辯 日 字</p>		<p>答 辯 者</p>	
<p>答 辯 內 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의 2항 및 등법시행령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며 ○ 사용용도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○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용이익의 일부를 전용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여 이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함 ○ 수수료 사용금액은 우리군에서 조정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지정받아 예산에 편성 사용하고 있음 ○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현황 (별 첨) 		

답
변
내
容

구분 년도	유 형 별	건 수	금 액
94년	부 담 금	718	3,701,120,720원
	수 수 료	718	185,056,030원
95년	부 담 금	286	1,317,152,340원
	수 수 료	286	65,858,000원